

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4.

발 의 자 : 허 영 의원

찬 성 자 : 31인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24명과 2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4호, 제12호, 제14호 및 안 부칙 제1조, 제2조).

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호 중 “재정경제위원회”를 “재정경제기획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호 중 “30명”을 “24명”으로 한다.

안 제14호 중 “16명”을 “22명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안 부칙 제2조 중 “재정경제위원회”를 “재정경제기획위원회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「국회법」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.	-----.	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4. <u>기획재정위원회</u> 26명	4. <u>재정경제위원회</u> ---	4. <u>재정경제기획위원회</u> ---
5. ~ 11. (생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	5. ~ 11. (개정안과 같음)
12.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	12. ----- ----- - <u>30명</u>	12.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<u>24명</u>
13. (생략)	13. (현행과 같음)	13. (개정안과 같음)
14. <u>환경노동위원회</u> 16명	14. <u>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6명</u>	14. <u>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명</u>
15. ~ 16. (생략)	15. ~ 16. (현행과 같음)	15. ~ 16. (개정안과 같음)
17. <u>여성가족위원회</u> 17명	17. <u>성평등가족위원회</u> --- 부 칙	17. (개정안과 같음) 부 칙
	제1조(시행일) <u>이규</u> <u>칙은 법률 제 호</u>	제1조(시행일) <u>이규</u> <u>칙은 2025년 11월</u>

<u>국회법 일부개정법</u>	<u>1일부터 시행한다.</u>
<u>률의 시행일부터</u>	-----
<u>시행한다.</u> 다만, 제	-----
4호의 개정규정 및	-----
부칙 제2조에 따라	-----
개정되는 국회세종	-----
의사당의 설치 및	-----
운영 등에 관한 규	-----
칙 중 제4조제1항	-----
제2호의 개정부분	-----
은 2026년 1월 2일	-----
부터 시행한다.	
제2조(다른 규칙의 개	제2조(다른 규칙의 개
정) 국회세종의사당	정) -----
의 설치 및 운영	-----
등에 관한 규칙 일	-----
부를 다음과 같이	-----
개정한다.	-----
제4조제1항제2호 및	-----
같은 항 제10호를	-----
각각 다음과 같이	-----
한다.	---
2. <u>재정경제위원</u>	2. <u>재정경제기획</u>
<u>회</u>	<u>위원회</u>
10. 기후에너지환	10. -----
경노동위원회	-----



규칙 제 호

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호 중 “기획재정위원회”를 “재정경제기획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호 중 “30명”을 “24명”으로 한다.

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.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명

제17호 중 “여성가족위원회”를 “성평등가족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국회세종지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국회세종지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재정경제기획위원회

10.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「국회법」 제38조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.	-----
1. ~ 3. (생략)	-----
4. <u>기획재정위원회</u> 26명	-----.
5. ~ 11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12.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<u>30명</u>	4. <u>재정경제기획위원회</u> ---
13. (생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
14. <u>환경노동위원회</u> 16명	12. -----
15. ~ 16. (생략)	--- <u>24명</u>
17. <u>여성가족위원회</u> 17명	13. (현행과 같음)
	14. <u>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</u>
	<u>22명</u>
	15. ~ 16. (현행과 같음)
	17. <u>성평등가족위원회</u> ---